

행 정 자 치 부

훈 계 요 구

제 목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지연이행

기 관 명 강서구

훈계대상자 강서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5.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과 관련한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를 처리하였다.

강서구에서는 2016. 1. 9. 민원인(○○○)로부터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⁹⁾을 매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받고 2016. 2. 2. 대상 건물의 증축 부분은 위법 건축물¹⁰⁾이므로 이 토지의 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19조¹¹⁾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2016. 4. 24.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9) 부산 ○○구 ○○동 000 대 251㎡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그 지상에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6.6㎡,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9.2㎡가 있음

10)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파이프 구조의 작업장 11.7㎡, 경량철골 구조의 화장실 11.2㎡가 증축되어 있었음

11)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은 2016. 1. 19. 제정(시행 2017. 1. 20.)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제8조에 따르면 종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신청은 종전의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2016.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용도지역 등에 의한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소판결(2016○합00000 판결선고일 2016.10.20.) 결과¹²⁾를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강서구 규칙 제599호)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패소 사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의 처리기간은 15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민원

1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조제3항제1호는 무허가건물의 위법 상태가 사후에 적법한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증축 부분에 대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증축 부분의 철거 등을 통하여 위법상태(건축법상 건축허가 미비 상태)는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이 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함

사무 처리기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 11. 5.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의 이해부족 등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으로부터 2017. 1. 4. 다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2017. 1. 20. 허가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지연이행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지연하여 민원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